

특집 I / 실행이시에게 듣는다 ①

獸醫務 事業 推進方向과 計劃

박 근 식

머릿말

현대국가는 어느 나라이던 법치국가이다. 이념과 사상이야 어떻게 되었던 법이 없이는 국가통치는 물론 사회질서나 국민의 생활이 하루라도 견딜 수 없고, 혼란이 야기된다. 일찍 기원전의 성서에도 여러 가지 율법이 있었고 이들 성서에 기록된 율법이 근대법률의 기초가 되었음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수의업무분야에 관련된 것도 이들의 성서에 나오는 율법과 관련된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식육검사제도에 있어서 지중해의 초기문명국에서 식육동물의 적부(適部)를 모세의 율법(구약성서: 레위기, 신명기)에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인류가 지구상에서 생활하여 오면서 동물과는 특별한 관계를 맺어 왔었다. 때로는 인간의 생명보호, 사역(使役), 식품, 의약품 및 생활용품으로서 인간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이었기에 수의학 또는 수의직업이 생겼으며 인간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켜야 할 규범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다.

현대사회가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더욱 수의학 분야나 수의사 직업분야와 인간생활과는 더욱 관련성이 깊어지게 되었다. 우리 수의사의

직업에서 사회에 봉사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수의직업에 관련되는 새로운 분야는 물론 이미 정착되고 있는 수의무 중에서도 시대에 맞게 대처할 일도 산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발에는 그것이 비록 학술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일반 수의 생활수준에서도 변신되고 아이디어를 개발할 과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수의 학문이나 수의직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수의직업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 또는 전문이 있어야 가능하다.

금번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운동 “세계화”란 한국의 현시점에서 재조명해서 수의무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을 개괄하고자 한다.

수의업무의 범주

우리나라의 경우 명확하게 이것이 수의 의무의 범주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과거의 관례에 따라 수의사법에서 정해진 것이 수의직무라고 습관적으로 세습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의사법은 1956년에 제정되고 그동안 1974년, 1981년, 1994년 3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7장 41개 조항, 부칙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의 제 1조 목적에 “이 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 위생상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회 이사, 수의무위원회 위원장, 수의과학연구소

제 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에 “수의사” “동물진료업” “동물병원”에 대한 용어해설이 있고, 수의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 3조에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검사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 라고 수의업무의 한계를 정해두고 있다.

제 2장에서 수의사의 면허, 자격 등과 진료에 대한 것을 정하고 제 3장에 동물병원의 개설, 관리, 제 4장에 수의사회의 설립과 인가 등, 제 5장에서는 정부에서의 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제 6장에서는 보칙으로 연수교육, 광고 및 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 마지막으로 제 7장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의사법에 보면 수의직무는 ① 동물의 진료와 보건, ② 축산물의 위생검사로 명확하게 되어 있다.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의 기능의 최고수준과 그의 업무의 적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다. 따라서 수의직무는 그 시대와 사회의 발전의 정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바뀌어져 가야하고 항시 자기 변신에 의하여 그 사회에 공공성(公共性)을 유지하여 이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의사법에 반영되고 있는 수의 직무에 대하여 고도산업사회로 변천되어 가고 있는 한국과 세계화, 개방화에 걸맞는지 모두가 한번 정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수의직무와 관련된 법률은 ① 수의사법을 비롯해서, ② 가축전염병 예방법, ③ 축산물 위생처리법, ④ 약사법, ⑤ 축산법, ⑥ 사료관리법, ⑦ 초지법, ⑧ 낙농진흥법, ⑨ 한국 진도견 보호육성법, ⑩ 축산업 협동조합법, ⑪ 동물보호법, ⑫ 환경보존법, ⑬ 폐기물 관리법, ⑭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 어느 법률도 수의직무와 무관한 법은 없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 법 가운데 수의사법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지 여타의 법률에는 거의 관심밖에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수의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귀중한 몫을 담당할 때가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일부 수의사들이 수의사법이나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나 축산물처리법 이외의

관련법규 영역하에서 활동하는 수의사의 고충을 알고 있는지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 우리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나 시행령 등이 지금도 입안·검토되고 시행되고 있다. 우리 분야에서는 이를 검토·연구하는 부서마저도 없는 것이 실정이다.

수의무 위원에서 추진할 과제

금번 약사법과 수의사법의 개정을 계기로 이들 개정의 의의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또 수의산업의 주요 대상이 되는 축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개괄해 보면 이들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과 수의산업의 미래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비전을 내다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선배들의 지혜와 수의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근년에 들어와서도 노력의 흔적은 있으나 격변하는 축산에 미리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또한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교육, 연구, 시책분야를 비롯해서 또 수의사 단체와 수의사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수의산업의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각 분야에서 때로는 개개인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하여 그 힘을 한데 묶어 총력을 기울일 때 우리의 청사진은 현실화 되리라 믿는다. 필자의 짧은 지식과 경륜으로 수의산업 즉, 수의무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수의무 사업방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1) 미래지향적 수의·축산 관련법과 제도의 과감한 개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산업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다. 본연의 수의산업 분야에서도 임상수의, 제약, 수의기술의 서비스업에서 환경위생, 축사위생, 사료위생, 개체위생, 환경보전, 야생동물의 보건과 축산현장에서 생산을 높이기 위한 방역위생사업, 공중위생의 분야로서 식품위생(도축, 도계, 유통, 처리, 계란, 기타 특수동물 유래 식품 및 약품)을 통한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개선에 이르기까지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실험동물분야와 대중음식점의 식품과 식품취급 위생관리 등 수의분야의 학문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의 연구와 시책으로 반영, 수의산업의 공공성의 유지 확대, 수의 서비스 기술보급의 체계화 등 일련의 모든 것은 법과 제도에 비롯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주지하는 바와 같이 GATT에서 UR, UR에서 이제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ing Organization)에 대비한 세계 법은 축산분야에 관한 한 국내의 적으로 수의분야가 중심이 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법률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다. 공익성을 띤 분야에 치밀한 계획과 연구를 통해서 침투할 분야가 많다. 이러한 것은 다른 분야에서 손대기 전에 우리가 주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대학의 수의법규 담당교수, 연구분야, 시책담당부서 등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2) 수의임상 분야의 과학적이고 실험실 진단에 의한 진료

—전국에 있는 병성감정실을 최대한으로 활용—

수의학은 실천과학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 축산의 미래는 일정규모(국제적 경쟁력 규모) 이상의 양축장만 생존할 수 있어 종전의 영세 양축가를 상대로 한 임상대상은 격감하게 된다. 여기에서 되풀이 되지만 왜 우리가 동물약품 취급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했나? 우리는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임상영역에서 과학적이고 실험실을 근거로 한 임상봉사가 이루어졌다면 양축장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분간 일선 개업동물병원에서 모든 진단을 실험실 데이터를 기초로한 진단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가축위생시험소, 농촌지도소의 진단실, 각 수의과대학,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병성감정실을 최대한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닭 한마리, 돼지새끼 한마리 뒤에는 적어도 수 천두의 돼지, 수 만수의 닭이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품을 그 농장의 병성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조제하여 처리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유통되고 있는 동물약품은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에 대한 공통적인 처방에 의하여 조제되었기 때문에 축종에 따라 거의 100여종에 이르는 질병들의 복합질병과 질병 유발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 농장에서 그때 발생한 것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3) 개체 진료에서 Herd 단위의 진료로 전환

최근의 양축 형태는 집단사육 형태이기에 진단과 치료도 집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집단진료에 대한 개념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식용동물의 경우 개체보다 군(群) 단위의 임상관찰과 때로는 발생한 질병의 대표성을 띤 가검물(폐사동물이나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동물)을 수집하되 사육단위별로 병성감정을 실시한다.

병리해부학적 진단에서 다음 단계는 병원학적, 혈청학적, 병리조직학적인 진단을 실시하므로써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최근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시험연구 결과를 보면 동물질병의 진단에 관한 연구가 거의 30%에 이르고 있으며 가능한 특수장비가 없어도 진단할 수 있는 기법(키트진단)이 계속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시험이 끝난 다음해에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나 지도소 진단실 요원에게 교육훈련시켜 보급하고 있다. 금번에 개정된 수의사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새로운 연구결과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교육에 필히 반영하여야 한다.

(4) 동물질병 진단체계의 확립에 적극 참여

—수의산업의 중추적 역할 담당—

필자는 많은 수의 선진국을 우리나라의 수의제도 개선을 위해서 살펴볼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어느 나라이던 수의체계는 질병진단의 체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으며 외부적으로나 실질적인 면에서 수의산업의 근간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조건이 부여되어 모든 동물은 제도적(법률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수의사의 영역하에 두고 있다. 따라서 최일선에 배치된 개업수의사가 1차 진단을 실시하되 실험실의 시설이나 장비의 동물이 필요할 때는 그 지역에 배치한 정부기관의 진단실이 1차 진단기관이 된다(각 시·군 지도소 진단실).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2차 진단실(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의뢰된다. 최종진단은 수의과학연구소 또는 국제표준진단소(Reference Laboratory)가 된다.

어느 나라이던 이들의 병성감정 의뢰는 수의사의 검진결과가 첨부되어 의뢰되고 의뢰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업수의사에 의해서 병성감정이 의뢰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아마 개업수의사의 자존심(?)의 타인지 모르지만 미국에 있는 개업수의의 경우도 국가 또는 대학의 병성감정시설을 본인의 진료활동에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진료의 수준을 높이고 있어 주변의 양축장으로 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해외 질병이나 법정전염병의 경우는 병성감정 의뢰를 2~3차 또는 최종진단 국가기관에 동시에 의뢰하여 신속한 진단결과를 입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같은 진단체계를 빨리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치하여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다.

(5) 최신 수의기술과 전문지식으로 무장

-폭넓은 수의학문의 지식과 기술의 연마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수의사상(像) 확립-

우리들 세대는 공부에 지쳤다 고들 한다. 그리고 열심히 뛰어 저 나일강의 기적이 100년에 이루었다면 우리는 불과 30년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주체이다.

한국 축산이 UR 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주도하는 세력이 없다. 축산은 우리직업의 중요한 대상의 산업이다. 한국 축산의 장래는 수의분야에서 책임져야 하고 리드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UR시대에서 WTO로 넘어

가는 이 과정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WTO체제는 처절한 경쟁에 강자는 약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철저한 원리만이 통용되는 세상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형편은 선진국도 아니요, 그렇다고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저개발국도 아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대외 외교에 아주 모호한 입장에서 엉거주춤하다 보니 이것 저것 다 놓치고 만다. 우리 축산산업이 그러하다. 그러할 바에야 우리는 기왕 겪어야 할 선진국 진입에 있어 산모가 겪는 고통을 이를 계기로 넘어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많은 축산 선진국에서 세우고 있는 전략을 오래전 부터 직접 탐색하여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리나라 축산 뿐만아니라 세계의 식용동물산업(축산)은 동일한 품종(한우 제외)을 갖고 그 나라 기후 풍토에 맞는 사양관리와 그 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질병을 최선으로 관리하여 그 품종이 갖는 고유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생산성을 높여 가격경쟁에 이기고 질병의 체계적인 관리는 높은 품질의 축산식품의 원료를 확보하여 그의 안전성과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이로서 축산물 수입개방에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여기에서 질병관리의 방법과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맞는 축산환경위생, 생축의 생산에서 도축, 도계 가공에 이르기까지 필자 자신이 이미 전략을 세워둔 바 있다. 다만 최일선을 맡고 있는 수의사에게 최첨단의 무기(수의기술과 지식)로 무장하여야 한다.

금번 수의사법 개정에 있어서 교육훈련의 의무조항을 강화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의가 크다. 다행스럽게 전국 각 수의과대학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젊고 외국의 선진 수의기술분야에 훌륭한 연구업적을 쌓아 올린 교수들이 확보되고 또 수의 응용기술의 요람지인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그 연구인력이 숫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보강되었을 뿐만아니라 이미 국제적인 수준인 G7에 들어갔다고 인정을 받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얻어진 기술이 현장화하는 데는 문제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일선 수의사에게 새로운 첨단무기로 무장하는 일이 종전의 형식적인 보수교육에서 탈피하여 야 하고 또 전국 수의사는 그 직장이 어디에 있던지 몇시간 안되는 수의보수교육에 의존하지 말고 수의 관련 모든 학회에 가입하여 각 학회 회의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수의기술과 지식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6) 재촌(在村) 동물병원 양축장의 경영자적 병원 관리로 전환

1986년과 1987년에 FAO/OIE에서는 수의경제학의 이론을 정립한 바 있다.

이제 우리 수의분야도 단순한 질병의 진료에만 전념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양축장의 경영자로서 자질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최근 질병에 의한 피해는 단순한 한가지의 질병에 의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단순한 기술들은 양축장에서든 익히 알고 있다. 그 수많은 질병발생의 직접적인 요인과 환경요인, 나아가서는 사회과학적인 요인까지 포함해서 진료에 임하는 한편, 이들에 의해서 양축장의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며 생산기술지표가 어디에 머물러 있으며 이를 국내 수준, 때로는 국제적 지표, 나아가서는 고위지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의학적 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접근방법을 제시하여 소득을 높이는 양축장으로 유도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때로는 양축장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컨설턴트의 역할로 경영개선에서 얻어지는 수입액의 10% 지분을 보장받는 한차원 높은 병원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방법은 내년부터 전개되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지역경쟁에서 이기는 하나의 전술이기도 하다.

(7) 도시 동물병원 : 새 영역확충과 애완동물의 건강 진단 실시에 대한 제언

편의상 필자는 재촌(在村)의 동물병원과 도시의 동물병원을 구분하여 보았다. 도시속의 동물병원은 물론 소동물병원으로 구분되지만 식용동물을 중심으로 사육장의 임상수의와 애완동물을 중심으로한

도시 수의임상을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소득이 높아가고 생활이 윤택하게 되므로 정서생활에서 도심지에서는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가정과 애완동물의 사육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개나 고양이 그리고 특수애완동물 및 조류, 수생동물 등 사육에 따른 이들 애완동물의 다양성에 따른 임상학과 이들로 인하여 인간과 애완동물의 사회학적, 심리학적 연구는 수의공중보건 측면에서 이들간에 상호교류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의 예방대책과 애완동물의 보전, 번식과 이용, 안락사, 장례분야에서 아동들의 애완동물을 다루고 인간관계를 맺는 홍보교육 등에 관한 연구와 실천 특히 애완동물에 대한 인수공통전염병 부재증명을 위한 실험실적인 진단 확인 즉, 애완동물에 대한 보건증을 발급하는 제도 등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되어야 되리라 믿는다.

(8)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수의정책의 준비

수의와 관련한 여러가지 법률들이 있다. 예를 들어 약사법과 동물약품 취급규칙, 수의사법, 축산물 위생처리법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비롯해서 축산법, 동물애호법 또 오물 및 축산 폐수처리법 등 여기에서 앞으로 수의공중위생과 직접적인 가축 질병 예방법이나 축산물 위생법의 실제적인 실시 책임자는 지방정부의 장이 되어 있어 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되면 지방장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이고 법률이 정한 테두리 속에서 지방장관이 주도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행정의 상당한 부분이 그 지방의 장에 따라 축산산업의 진흥이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장관의 결심에 따라 특정질병의 박멸사업의 계획의 입안과 실시를 위해서 지방간의 가축의 이동제한 등도 가능하고 또 현행법규의 보다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입안하여 추진하여 타도보다 축산을 진흥시키는 독자적인 계획의 추진으로 보다 활력있는 행정을 펼쳐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간의 선의의 경쟁을 위한 준비도 지방화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는다.

(9) 총체적 수의사의 단결 협동체제의 구축과 수의직무의 효율을 높이는 직능별 단체의 육성

1994년 4월 현재 수의사로서 신고등록한 수의사가 5,808명이었으며 진출한 직업분야도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의사의 직업적인 특수성과 법정 법인체인 수의사회가 오래전부터 창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축산의 여건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다. 수의사법에 의해서 수의직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축산 관련단체는 그때 그때 축산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단체를 만들어 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영역을 확충하여 왔는데 비해서 수의분야는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정부의 역할에 치중하여 수의영역에서 정부와 협력체제를 이루거나 또 민간단체가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육성은 거의 불모지였다.

앞으로 수의사회 이외의 단체를 만들어 2,000년대 축산의 미래를 여는데 중추가 되는 기능을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구성은 물론 봉사업무에 힘을 기울여야 하고 작년도 개최한 바 있는 전국 수의사대회를 정기적으로 가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우리가 갖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단합된 모습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0) 수의사의 동물약품 판매 취급권의 시행에 따른 동물약품 유통질서의 확립과 윤리강령의 제정과 준수

금번에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서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의약품을 동물의 사육자에게 판매 취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약품의 판매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다.

이 항에서는 동물약품의 판매 취급에 앞서 몇가지 사항을 익히고 엄두해 두어야 할 사항 몇가지를 기

술하고자 한다. 시간관계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이 마련되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중요한 항목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약품의 품질보증체계의 이해

나. 판매업의약품보관과 품질 확보

계약회사에 공급된 약품을 보관하였다가 동물사육자의 최종 소비단계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최선의 보관, 관리하여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동물약품에 의한 위해를 방지할 의무를 지닌다.

다. 동물의약품 유통에 따른 품질보전에 관한 실천규범

라.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행동규범 제정의 필요성

마. 사용자 단계에서의 보관·관리의 지도 의무

추진계획

앞으로 수의무 과제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과제를 추진하는 데는 이를 감당할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까지 대한수의사회의 조직이나 그 인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가능하다면 수의사회 안에 수의무 정책개발연구소를 설치하여 수의직무에 대한 세계적인 정보와 수의직무의 미래학을 연구하는 연관된 분야에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과 우리 분야에서 개발되는 기술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회제도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되 수의무의 중심역할을 하는 수의사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수의사회의 예산범위에서 현재의 수의사회의 명맥을 유지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그 예산으로 바로 작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이 앞선다면 가능하다.